

과천시 자치법규(안) 입법예고

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『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7일

과 천 시 장



1. 자치법규명 :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가. 환경센터의 기능에 환경교육사업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·실천사업 발굴·추진, 안심 생활 환경을 위한 감시·지원사업을 추가
- 나.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센터의 업무 범위 및 내용 추가·조문 정리
 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·실천사업
 - 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위한 감시, 지원사업
 - 자연환경 보전사업 관련 조문 정리

나. 환경센터 위탁 추진 중 대학 또는 대학교수가 포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현실성있게 변경

4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2년 11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이메일, 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의견 등

라. 제출기관 : 과천시 환경위생과

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 과천시 환경위생과(환경관리팀)

- 전 화 : 02)3677-2241

- 이메일 : yolly618@korea.kr

- 팩 스 : 02)2150-1514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법 규 명 :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 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

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2.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·실천사업
3.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 실천사업
4. 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위한 감시, 지원사업

제19조제1항 전단 중 “환경에” 를 “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, 환경에” 로, “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우선적으로 위탁” 을 “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환경위생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환경위생과장 이 상 욱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팀장 이 영 란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영 란 (3677-224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자연환경 개선 실천사업 추진</u> 3. <u>깃대종 · 지표종의 복원 · 보전 및 홍보</u> 4. <u>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, 전시 및 환경오염 감시</u> 5. <u>생물다양성 사업 추진</u> 6. <u>환경정화시설 등 자원순환과정 교육 및 홍보</u> 7. <u>서식지 조성</u> 8. <u>생태교란종 제거</u> 9. (생 략) <p>제1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,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환경 관련 비영리</u></p>	<p>제17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· 실천사업</u> 3. <u>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 실천사업</u> 4. <u>시민 안심 생활환경을 위한 감시, 지원사업</u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<u>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, 환경에 -- --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-----.</u></p> <p><후단 삭제></p>

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의 교수(조교수 이상)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